
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것이 의무규정임을 명확히 표현하고,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(안 제17조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화 실)